

##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2. 4. 17.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 1. 제안이유

지방상수도 정수장 시설관리사의 운영비(보일러운영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상수도 정수장 관리자(3급관사)의 보일러운영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을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56조)

##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중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일러 운영비 (단, 1급, 2급, 3급 관사에 한함)
5. 전기요금(단 1급, 2급, 3급 관사에 한함)
6. 전화요금(단, 1급, 3급 귀사에 한함)
7. 수도요금(단, 1급, 2급, 3급 관사에 한함)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관사운영비의부담) (생략)	제56조(관사운영비의부담) (현행과 같음)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보일러 운영비(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3. 보일러운영비(단, 1급, 2급, 3급 관사에 한함)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전기요금(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5. 전기요금(단, 1급, 2급, 3급 관사에 한함)
6. 전화요금(단, 1급 관사에 한함)	6. 전화요금(단, 1급, 3급 관사에 한함)
7. 수도요금(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7. 수도요금(단, 1급, 2급, 3급 관사에 한함)
8. (생략)	8. (현행과 같음)